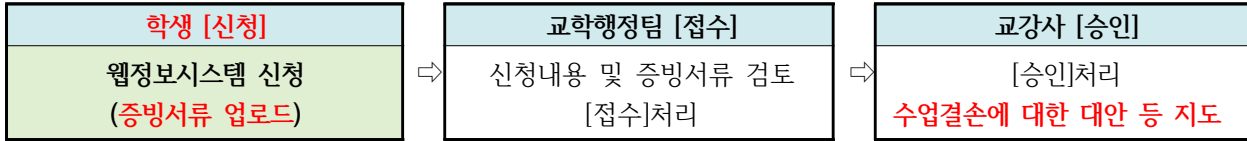


2023-2학기 유고결석 출석인정 안내

□ 정의 :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는 자에 대한 출석의 인정

□ 절차(세부방법 붙임 참조)



□ 출석인정 사유

1. 일반사유

인정사유	인정기간	증빙서류
배우자, 직계존비속의 사망	당일부터 7일	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증빙서류
4촌 이내의 친족 사망	당일부터 3일	
본인의 출산	20일	출생증명서
배우자의 출산	5일	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
입원 치료	2주 이내	1. 진료비 영수증 2.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
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	2주 이내	1. 진료확인서 2. 진료비 영수증, 처방전, 약국 영수증 중 택1
징병검사	검사일	징병검사 통지서
예비군훈련	훈련기간	교육훈련 참석 확인서
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	해당기간	해당기관 공문
총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중요행사 참여	해당기간	승인 관련 서류
최종학기 취·창업(인턴포함)	해당기간	<취업> 1. 재직증명서 2.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 (인턴의 경우 해당 기관장의 가입예정증명서 가능) <창업> 1. 사업자등록증 2. 직장건강보험가입증명서
최종학기 취업을 위한 면접, 시험에 참여	해당일	해당 기관장 확인서
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위한 절차 및 교육 이수 참여	해당일	해당 부서장 확인서

2. 학생선수

대상	사유 및 인정기간	증빙서류
체육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하여 대한체육회 회원단체종목에 선수로 등록된 자	훈련 및 시합출전 기간(수업시수 대비 최대 1/2까지)	소속대학 및 해당기관 공문
회원단체종목 이외의 종목 및 국내·외 프로 입단자	인정하지 않음, 다만 국가대표(상비군 포함)는 육성종목과 동일하게 인정함	국가대표일 경우 해당기관 공문

□ 유의사항

1. 출석인정은 사유발생 전이나 사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해당기간 이후에는 출석인정사유의 효력을 상실(단, 최종학기 취·창업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)
2.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치료 사유인 유고결석의 경우 병원진료 당일만 인정.
(단, 증빙서류에 치료기간 또는 격리권고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, 2주 이내 가능)
3.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행사 참여시 주관기관 행사의 구성원으로 참여 요청이 있는 경우만 인정.(개인참석시 불인정)
4. 유고결석 신청내역 접수(교학행정팀) 시 해당수업 교·강사의 웹정보를 통해 유고결석 신청자 알림 안내.
5. 증빙서류 위·변조행위에 의한 신청은 학칙 제59조의 2항 및 학생상벌규정 제4조에 의거 엄중 처벌.
6. 유고결석자 출석인정은 출결에 국한된 사항으로, 수업결손에 따라 담당 교·강사가 제시하는 과제, 논문, 시험 등의 지도 및 평가에 따라 성적을 부여.
7. 신청 및 승인은 개강일[2023.09.01.(금)] ~ 성적공시(입력)종료일[12.28.(목)11시] 까지 가능.

교 무 처 장